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4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 박지혜・위성곤・조인철

김성환 · 김문수 · 이개호

박수현 · 김정호 · 김원이

오세희 • 정진욱 •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

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32조 등).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정성평가에"를 "안전성평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평가방법"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기술기준(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3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 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11조제1항제14호 중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를 "안전성평가"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 취소 등의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 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 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20조제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 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 부터 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실 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 필요한 -----안전성평가에--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 <신 설> 성평가는 최신기술기준(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통・ 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 영한 기술기준을 말한다)을 적 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통보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u>평가방법</u>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제22조제2항 · 제23조제2항 · 제27조 · 제92조제2항 또는 제 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7. ~ 9. (생략)

② (생 략)

제32조(건설허가 · 운영허가의 취

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⑤주기적 안전
<u>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u>
·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
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 9.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설허가·운영허가의 취

소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 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 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 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10. (생략)

11.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u>제23조제2항</u>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생 략)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저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소 등) ①
<u>.</u>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 10. (현행과 같음)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 10. (현행과 같음) 11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 10. (현행과 같음)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 10. (현행과 같음) 11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 기적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8. ~ 10. (현행과 같음) 11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위탁할 수 있다.

- 1. ~ 13. (생략)
-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의2. ~ 16. (생략)

② ~ ⑤ (생 략)

-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7항(제34조·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7조

 1. ~ 13. (현행과 같음) 14
<u>안전성평가</u>
14의2.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1
제23조제4항

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 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 조의4제4항·제75조제2항 또 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